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7. 3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epa_north@naver.com)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북부지소 ☎ 054-900-3801 (E-mail) gepa_north@naver.com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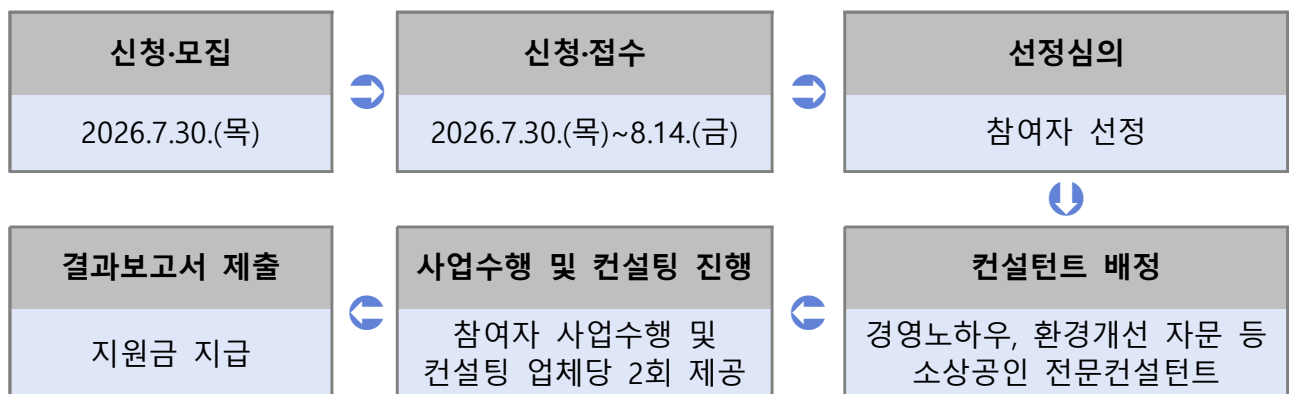
- 개별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 선 정 방 법	: 대면심사
○ 사 업 내 용	: 공고문 내용 참조
○ 지 원 금 액	: 업체 당 최대20,000,000원(금이천만원)
○ 신 청 방 식	: 이메일 접수(gepa_north@naver.com)
○ 지 원 규 모	: 2명(개소)

○ 신 청 서 접 수 일 시	: 2026.7.30.(목)
○ 신 청 서 접수마감일시	: 2026.8.14.(금)

2.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경영·심리적 안정 및 재기울 향상에 기여
- ☐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지원대상

□ 자격조건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3.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4.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사업신청일 기준)

□ 참여자 제외대상

1.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3.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4.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5.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자(10백만원 이상)
6.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7.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불임2)
8.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9.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¹⁾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자부담)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

1)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²⁾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표1 :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천원)
필수	컨설팅	-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 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별도지원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인테리어	-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출입문, 화장실 개선	15,000
	홍보 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포장용기, 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6,000
	설비 지원	- CCTV,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법설비 구축 및 구매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4,000

-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지원 세부내용

1. 지원금 지급

가.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사업주가

2)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권리금,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

2. 지출증빙 세부사항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나.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제작/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
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외상거래 절대 불가

3.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다.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마.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사.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원금 변경 및 포기

가.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

나.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불가능하나,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

다.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라.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지원금 지급 관련

가.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7. 30.(목) ~ 8. 14.(금)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gepa_north@naver.com)

- 신청서 내(內)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1개의 PDF파일(성명_재창업 지원)만든 후 E-MAIL 발송

[표3: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붙임1]
2	세부계획서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이력전부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등 본인 소유의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을 확인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4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5	개인정보동의서	서식[붙임1]
6	사업이행각서	

7. 선정절차

□ 선정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심의(허위, 부실 등)
가. 선정규모: 2명(개소)
- 나. 선정방법: 대면평가 진행 *단, 모집규모 대비 신청이 미달이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1)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2) 사업계획서, 참여자 역량, 지속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 선정 통보 및 컨설턴트 배정

-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진흥원은 수요발굴 해당 컨설턴트를 우선하여 사업자의 지역, 업종, 분야에 부합하는 컨설턴트를 매칭함.

□ 사업수행 및 컨설팅 운영

- 참여자 사업 수행 및 컨설팅(업체당 2회) 운영
-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8.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사업비 집행이 적정할 시 15일 이내 지급
- 지급계좌: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확인된 계좌로 계좌입금(통장사본)
 - 이체내역서(송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경제진흥원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참여희망 소상공인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계획을 보류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 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기본정보 오기입,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영주시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붙임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제외대상 1부. 끝.